

## 투자설명서 변경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 연금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2	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3	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) 5 호

### 2. 변경 내용

아래 첨부된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효력 발생일

2020 년 06 월 03 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(주)

# 정정신고(보고)

2020년 6월 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- 프랭클린 연금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5.05.22

3. 정정사유 :

-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→2등급)

- 연갱신에 따른 변동성 수치 변경 및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(19.9.16.)에 따른 정정

4. 정정사항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b>2020년 6월 3일</b> 결산시 산정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 변경(3등급→2등급) 및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가.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운용경력년수  다.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운용 자산규모	가.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운용경력년수 <b>업데이트</b>  다.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운용 자산규모 <b>업데이트</b>
8. 집합투자	<문구추가>	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

기구의 투자 대상		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.
9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전략 및 수익 구조	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	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 <b>업데이트</b>
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b>3등급</b> 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14.86%</b> 입니다. 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<b>3등급</b> 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<b>세 번째로 높은</b>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<b>다소 높은</b>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b>2등급</b> 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18.11%</b> 입니다. 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<b>2등급</b> 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<b>두 번째로 높은</b>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<b>높은</b>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나. 환매 (6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>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.</b>	나. 환매 (6)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>&lt;삭제&gt;</b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[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, 비용]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업데이트</b> [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, 비용] <b>업데이트</b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	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

	<p>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b>실물양도</b>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	<p>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b>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</b>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<p>가. 요약재무정보 나. 대차대조표 다. 손익계산서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 <b>업데이트</b> 나. 대차대조표 <b>업데이트</b> 다. 손익계산서 <b>업데이트</b></p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-	<b>업데이트</b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<p>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.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</p>	<p>가. 연평균 수익률 <b>업데이트</b>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<b>업데이트</b> 다.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<b>업데이트</b>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	<p>라. 운용자산규모 <b>업데이트</b></p>

# 정정신고(보고)

2020년 6월 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- 프랭클린 월지급 미국 하이일드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1.05.13.

3. 정정사유 :

- 투자위험등급 변경(5등급→4등급)

- 연갱신에 따른 변동성 수치 변경 및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

4. 정정사항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		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-	<b>2020년 6월 3일</b> 결산시 산정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험등급 변경(5등급→4등급)
5.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	가.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운용경력년수  다.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임 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	가.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,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, 운용경력년수 <b>업데이트</b>  다. FTIF Franklin High Yield Fund 책임 운용인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<b>업데이트</b>
9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전략 및 수익 구조	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	나. 위험관리 [환헤지] ④ 환헤지 비용 <b>업데이트</b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b>5등급</b>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4.30%</b>입니다.</p> <p>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<b>5등급</b>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<b>다섯번째로 높은</b>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<b>낮은</b>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(1)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<b>4등급</b>으로 분류되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은 <b>8.17%</b>입니다.</p> <p>(2)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<b>4등급</b>에 해당하는,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<b>네번째로 높은</b>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,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 중에서 <b>보통의</b>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,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[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, 비용]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업데이트</b></p> <p>[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, 비용] <b>업데이트</b></p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</p> <p>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b>실물양도</b>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	<p>나. 과세</p> <p>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원천징수 원칙</p> <p>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(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)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, 계좌의 명의변경, <b>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</b>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/p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<p>가. 요약재무정보</p> <p>나. 대차대조표</p> <p>다. 손익계산서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 <b>업데이트</b></p> <p>나. 대차대조표 <b>업데이트</b></p> <p>다. 손익계산서 <b>업데이트</b></p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-	<b>업데이트</b>
3. 집합투자	가. 연평균 수익률	가. 연평균 수익률 <b>업데이트</b>

기구의 운용 실적	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다.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	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<b>업데이트</b> 다.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<b>업데이트</b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	라. 운용자산규모 <b>업데이트</b>

# 정정신고(보고)

2020년 6월 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  
-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) 5호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05.04.
3. 정정사유:  
- 간이투설상의 판매수수료 & 환매수수료 오기로 인한 정정
4. 정정사항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 요약정보 >		
투자비용	판매 수수료 없음	판매 수수료 납입금액의 1.0% 이내
환매 수수료	1.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2. 90일 이상: 없음	해당사항 없음